

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(안)」

# 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## 제안일자 및 제안자

○ 제안일자 : 2005. 11. 7

○ 제 안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개정(제안) 이유

-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 (2005.5.31) 및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(2004.12.31)됨에 따라 법규에 맞게 일부내용을 정비·보완하고 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며 환경보전활동에 공헌이 많은 구민·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## □ 주 요 골 자

- 안 제3조 제3호 “원인자 부담의 원칙”을 “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 원인자 비용 부담의 원칙”으로 개정하고, 제5호 “자원·에너지 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”신설(추가)
- 안 제4조 제7호 “친환경상품”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,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.를 신설(추가)
- 안 제5조 “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연적·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 할 직무를 진다.”로 개정하고, 각 호를 신설(추가)
- 안 제10조의 제목 및 각 항의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게 “환경기본계획”을 “환경보전계획”으로 개정하고, 환경보전계획을 상위 법령에 맞게 “5년마다 수립”하여야 한다. 를 “10년마다 수립”하여야 한다. “다만, 필요시에는 10년이 되기 전이라도 환경보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”로 개정
- 안 제15조 제3항에 “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,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.”를 신설(추가)
- 안 제21조 제2항에 “제1항의 규정에 …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환경위원회를 둔다.”를 “제1항의 규정에 …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구에 환경위원회를 둔다.”로 개정

## □ 관련 법규

-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4, 제12조, 제14조의4, 제37조
- 친환경상품구매에 관한 법률 제2조, 제6조

## □ 타 자치단체 조례개정 현황

- 구로구, 관악구

## □ 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(2005.5.31)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(2004.12.31)됨 에 따라 법규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정비·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.
- 안 제3조 제3호 「원인자 부담의 원칙」을 「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 원인자 비용 부담의 원칙」으로 개정하고, 제5호에 「자원·에너지 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」을 신설(추가)하며
- 안 제4조 제7호에 「친환경상품」이라 함은 “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말 한다”를 신설(추가)함.

○ 안 제5조 환경보전을 위한 구의 책무에

제1호 대기, 물,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

제2호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

제3호 야생 동·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 
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

제4호 자원의 순환적 이용,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, 친환경상품  
생산·구매 확대 및 폐기물의 처리·감량에 관한 사항

제5호 유해화학물질의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

제6호 지구온난화 방지, 오존층 보호,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 
관한 사항

제7호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

제8호 인간과 자연의 공존, 양호한 경관의 보전, 역사적·문화적 유산의  
보전 등에 관한 사항

제9호 「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」을 신설(추가)하며,

○ 안 제10조에는 「환경 보전계획 작성주기를 5년」에서 「10년」으로하고

○ 안 제15조제3항을 「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·단체 등에  
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」를 신설(추가) 하였습니다.

○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제정 및 개정과 관련하여  
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·보완한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 
것으로 사료 됩니다.

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 
있으시길 바라며,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  
(안)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5. 11. 10

보고자 : 이남식